

# 『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』 중 난민신청자 개념과 처우 관련 수정 사항

2011. 5. 17.

공익변호사그룹 공감

황필규 변호사

## 제1장 총칙

법률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4. “난민신청자”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가.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</p> <p>나. <u>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다.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</p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4. “난민신청자”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가.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</p> <p>나. <u>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아직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다.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</p>

확정되지 아니한 자	확정되지 아니한 자
------------	------------

- \* 난민신청자는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난민 지위의 여부가 더 이상의 불복 방법 없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함.
- \*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 단계에서의 심사절차와 이의신청절차를 모두 포함함.
- \* ‘나’목과 ‘다’목은 이의신청 제기기간, 취소소송 제소기간, 항소 제기기간, 상고 제기기간에도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함.

### 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

법률안	수정안
<p>제5조(난민인정의 신청) ⑤ <u>난민신청자</u>는 「출입국관리법」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(난민인정불허결정 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)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난민인정의 신청) ⑤ <u>난민신청자</u>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</p>

\* 난민신청자의 개념 정의가 반복되는 부분 생략함.

### 제3장 난민위원회

### 제4장 난민 등의 처우

법률안	수정안
제1절 <u>난민의 처우</u>	제1절 <u>총칙</u>

<p>제36조(처우) ① <u>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</u>을 받고 체류하는 <u>외국인</u>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·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는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난민</u>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, 관련 법령의 개선,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절 난민의 처우</b></p>	<p>제36조(처우) ① <u>난민</u> 등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·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는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난민</u>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, 관련 법령의 개선,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\* 국제법의 적용과 정책의 수립은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.

법률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</b></p> <p>제47조(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)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</b></p> <p>제47조(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)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</p>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.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법률안	수정안
<p><b>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</b></p> <p>제48조(생계비지원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생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법무부장관은 <u>난민인정절차가 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제49조(주거지원) ① <u>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.</p> <p>② 주거시설의 종류·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</b></p> <p>제48조(생계비지원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생계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법무부장관은 <u>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</u>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제49조(주거지원) ① <u>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.</p> <p>② 주거시설의 종류·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\*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현물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.

\* 난민신청자의 개념 정의가 반복되는 부분 생략함.